

서울특별시 성북구 공공디자인 진흥에 관한
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(박영섭 의원 대표발의)



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

서울특별시 성북구 공공디자인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(박영섭 의원 대표발의)

의안 번호	92
----------	----

발의연월일 : 2023년 2월 9일

발의자 : 박영섭, 정기혁, 이일준, 정병기,
임현주, 강수진, 정윤주, 양순임,
경수현

1. 제안이유

서울시 공공건축·시설물에 서울특별시 유니버설 디자인 지침 적용이 의무화됨에 따라 우리 구도 서울특별시 유니버설 디자인 적용지침을 준용하는 법적 근거가 필요하여 조례를 제정하고자 함

2. 주요내용

- 가. 구청장은 「서울특별시 유니버설디자인 도시조성 기본 조례」 제10조에 따른 서울특별시 유니버설디자인 적용지침을 준용할 수 있다.
항목 추가(안 제13조제5항)

3. 참고사항

- 가. 관계법령 : 「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법률」, 「서울특별시 유니버설디자인 도시조성 기본조례」
나. 협조부서 : 건축과
다. 예산조치 : 필요시 조치
라. 입법예고 : 2023. 02. 09. ~ 2023. 02. 14.

서울특별시 성북구 공공디자인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

서울특별시 성북구 공공디자인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3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- ⑤ 구청장은 「서울특별시 유니버설디자인 도시조성 기본 조례」 제10조에 따른 서울특별시 유니버설디자인 적용지침을 준용할 수 있다.

신·구조문대비표

현행	개정안
제13조(범용디자인 가이드라인의 수립·시행) ① ~ ④ (생략) <u><신설></u>	제13조(범용디자인 가이드라인의 수립·시행) ① ~ ④ (현행과 같음) ⑤ 구청장은 「서울특별시 유니버설디자인 도시조성 기본 조례」 제10조에 따른 서울특별시 유니버설디자인 적용지침을 준용할 수 있다.